

03

한-터키 FTA 1년,
그 의의와 성과



03

한-터키 FTA 1년, 그 의의와 성과

진병진(국제원산지정보원 선임연구원)

한-터키 FTA 발효 1년, 양국 간 교역에서 확인되는 전체 수출입 및 품목별 수출입의 시사점을 찾아보고 향후 한-터키 FTA의 변화전망을 제시해 본다.

- 분석 배경 : 금년 4월말로 우리나라와 터키가 2년 5개월(2010년 3월~2012년 8월)간의 협상을 통해 타결한 한-터키 FTA가 발효된 지 1년이 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터키 FTA의 의의를 되짚어보고 한-터키 FTA의 발효 이후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 분석 범위 : 한-터키 FTA발효 이후 성과분석의 범위는 권고 작성 당시 교역통계가 확보되는 한-터키 FTA 발효 후 8개월(2013년 5월~12월) 간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양국 간 교역의 비교 결과가 계절적 요인 등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전년 동기(2012년 5월~12월)를 비교의 대상으로 하였다.

I. 한-터키 FTA의 개관

1. 한-터키 FTA의 체결 동기

터키는 유럽 및 중동과 맞닿아 있는 지정학적 중요성과 7,580만에 달하는 많은 인구 및 젊은 소비층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잠재력, 유럽 및 중동시장 등 거대시장과의 인접성 등 유망시장의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어 post-BRICs군에 빠짐없이 언급되는 국가이다.

특히, 역사적 관점에서 당나라에 밀려 중앙아시아로 넘어가기 전까지 고구려와 밀접한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던 투르크(돌궐)족의 후예로 삼국시대부터의 우리나라의 우방국으로, 1923년 터키공화국 건국 이후에도 한국전쟁 파병 등을 통해 형제의 나라로서의 관계를 돈독히 유지해 오고 있다.

경제개방측면에서 터키는 우리보다 빠른 시기에 FTA를 체결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1996년 1월 1일 EU와 관세

동맹(Customs Union)을 형성하여 무역인증 등 수출입 제도 전반을 EU의 관련 규정에 맞추어 정비하였다.

또한 터키가 FTA를 체결한 국가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EU가 FTA를 체결한 국가와의 FTA체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1996년 발효된 EU와의 관세 동맹에서 기인한 것으로 우리나라와의 FTA 역시 2009년 7월 한국이 EU와의 FTA를 타결함으로써 터키 측의 관심이 증대⁷⁾되었고, EU 또한 우리나라에 터키와 가능한 조속히 FTA협상을 개시하도록 권유한 바 있다⁸⁾.

터키의 FTA체결 희망 의사에 대해 우리나라도 유럽 및 중동시장 공략을 위한 전진 기지로서 터키가 지니고 있는 지정학적 중요성과 시장발전 가능성에 주목하여 한-터키 FTA를 체결하였다.

7) 터키-EU 관세동맹협정 제16조에는 EU가 제3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터키도 그 국가와 FTA를 체결하기 위한 필요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

8) "The Community recalls that according to the Customs Union in force between the Community and Turkey, the latter has the obligations relation to countries which are not members of the Community to align itself on the Common Customs Tariff and, progressively, with the preferential customs regime of the Community, taking the necessary measures and negotiating agreements on mutually advantageous basis with the countries concerned. Consequently, the Community had invited Korea to enter into negotiations with Turkey as soon as possible"(Joint Declaration on Turkey,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y and the Republic of Korea, 2009).

/ <그림 1-1> 터키의 지정학적 위치 /



/ <표 1> 한-터키 FTA 추진 경과 /

일시	내용	장소
2008.01.	터키, 한국과의 FTA 체결 제안	
2008.06.	한-터키 FTA 공동연구 개시	
2008.09.25.	한-터키 FTA 제1차 공동연구 회의	서울
2009.03.26.	한-터키 FTA 제2차 공동연구 회의	앙카라
2009.05.	한-터키 FTA 공동연구 완료	
2010.03.19.	한-터키 통상장관회담에서 FTA협상 출범 선언	앙카라
2010.04.26.-30.	한-터키 FTA 제1차 협상	앙카라
2010.07.19.-23.	한-터키 FTA 제2차 협상	서울
2011.03.07.-11.	한-터키 FTA 제3차 협상	앙카라
2012.03.07.-10.	한-터키 FTA 제4차 협상	서울
2012.03.26.	한-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가서명	
2012.08.01.	한-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정식서명	
2012.08.29.	한-터키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2012.11.23.	한-터키 FTA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3.01.10.	한-터키 FTA 비준동의안 터키 의회 통과	
2013.05.01.	한-터키 FTA 발효	
2014.04.30.	한-터키 FTA 발효 1주년	

2. 한-터키 FTA의 주요 내용

한-터키 FTA는 서비스 및 투자협정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협정이다.⁹⁾ 또한 농수축산물 등 우리의 민감 품목을 보호한다는 FTA추진전략이 충분히 발휘된 협정으로 ①공산품 전 품목의 7년 내 관세철폐, ②기 체결된 FTA 중 최고 수준의 무역구제조치 확보, ③원산지 자율인증제도 도입을 통한 중소기업자의 FTA활용도 제고, ④관세환급 허용 및 개성공단 역외가공 허용 등 많은 이익이 확보된 협정이기도 하다.

특히, 터키 측이 지속적인 양국 간 교역불균형을 이유로 농수산물 시장에 대한 개방을 강하게 요청하였으나, 쇠고기·돼지고기·신선과일·양념채소류 등 농수산물 민감 품목 모두 양허에서 제외되고 농수산물에 대해 10년 내 관세철폐를 동등 수준에서 양허함으로써 농수산물 분야 에서 우리 민감 품목에 대한 충분한 보호조치가 확보되었다.

한-터키 FTA에서는 수입액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99.6%, 터키는 100%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10년 이내에 관세 철폐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품목 수 기준으로 환산하면 우리나라는 92.2%, 터키는 89.8%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가 10년 내 철폐되는 것이다.

이를 다시 상품 특성별로 구분해 보면 공산품은 양측 모두 전 품목에 대해 7년 내 관세철폐, 농수산물 양허품목 비중은 품목 수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56.8%, 터키가 56.8%이고 수입액 기준으로도 우리나라가 95.7%, 터키가 97.3%로 유사하나 단기철폐(5년 이내 철폐) 비중은 수입액 기준으로 터키가 70.4%로 우리나라의 48.0%보다 높고 특히, 40.7%에 해당하는 우리 측 민감 농수산물이 양허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양허품목의 경우에도 관세부분감축, 장기관세철폐 등의 조치가 확보되어 있어 민감 품목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가능하며, 농수산물 對터키 최대 수출품 및 수출 유망 품목¹⁰⁾에 대한 관세 즉시철폐를 확보하여 우리나라의 이익증대에 기여 가능하다.

/ <표 2> 한-터키 FTA 제조업 양허유형별 주요 품목 /

양허유형	한국 주요 품목	터키 주요 품목
즉시철폐	공기조절기, 금속절삭가공기계, 모자, 냉장고, 아연관, 의료용기기, 양탄자, 광물성연료(나프타, 원유, 기타석유제품)	ABS합성수지, 기타플라스틱제품, 섬유판, 일부평판압연제품, 기타알루미늄제품, 합판, 신변장식용품, 포트랜드시멘트, 파티클보드, 조립식목재건축물, 철도차량부품
3년 철폐	내시경, 농약, 밸브, 베어링, 변압기부품, 펌프, 계측기, 대리석	차량용 고무타이어, 공기조절기, 가열난방기, 원동기와 펌프, 볼트와 너트, 기타산업기계
5년 철폐	조립식목재건축물, 제재목, 전동축, 알루미늄의 판·시트, 화강암, 가솔린 경차, 가솔린/디젤 소형	기타자동차부품, 면사, 편직물, 냉장고, 일부 합성필라멘트사, 합성필라멘트사 직물, 전동기, 가솔린/디젤 중대형
7년 비선형 철폐	-	1,600cc이하 소형승용차(4개 세번)
7년 철폐	양모사, 섬수모사, 직물,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PB)	양모 및 섬수모 혼방직물, 기어박스, 평판압연제품, 칼라 TV, 세탁기

9) 한-터키 FTA는 포괄적인 FTA가 될 수 있도록 기존 단일협정문을 한-ASEAN FTA방식인 기본협정, 상품무역협정, 여타 협정(서비스·투자협정)으로 분리하여 상품무역협정을 우선 타 결하고, 서비스·투자협정은 상품무역협정 발효 후 1년 내에 타결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포괄적인 FTA가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였고, 금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될 서비스·투자 협정 제7차 협상에서 최종적인 합의에 도달할 전망

10) 인스턴트커피, 담배, 라면, 기타조식식품, 소주, 김치, 간장, 된장, 맥주, 유아용조식식품, 한천, 황다랑어 등

II. 한-터키 FTA의 활용상 특징

1.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을 통한 한-EU FTA 동시 활용

한-터키 FTA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은 동물성 생상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한-EU FTA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한-터키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경우 한-EU FTA 특혜도 동시 활용 가능하다¹⁾.

한-터키 FTA와 한-EU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유사한 이유는 터키가 1964년 EU와 제휴협정을 맺어 일종의 준회원국 자격을 취득한 후, 1987년부터 EU에 정식 가입을 시도하게 되고, 1996년 EU와의 관세동맹이 정식 발효되게 되어 향후 EU가입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EU와 제3국이 맺은 FTA의 협정을 거의 준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표 3> 한-터키 FTA와 한-EU FTA의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

(단위 : 개)

구분	완전생산	세번변경	부가가치	가공공정	선택기준	결합기준	기타유형
터 키	411	1,225	302	858	1,983	259	14
EU	411	1,218	302	858	1,983	266	14

주 : 1. 각 유형별 개수는 HS 6단위를 기준으로 FTA관세특례법시행규칙의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

2. 협정에서 '특정한 공정의 수행'을 요구하는 경우와 '특정 물품으로부터의 생산'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가공공정기준으로 분류

3. 기타유형에는 특정재료의 중량이 일정비율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경우 등 일반적 기준으로 분류하기 곤란한 경우를 분류

2. 간소화된 원산지증명 절차

한-터키 FTA에서 적용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수출자 자율발급으로 특별히 규정된 양식 없이 운송장 등 상업서류에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문구를 기재할 경우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하면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는 한-EU FTA와 비교해 보아도 한-EU FTA가 6,000유로 이상의 수출을 할 경우 반드시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²⁾을 취득하여야만 자율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에 대한 제한이 없어 수출자의 FTA활용 편의가 확보되어 있다.

1) 특히, 설탕과자(HS 제1704호)·초콜릿 함유 식품(HS 제1806호)·기타 비스킷(HS 제1905,90호) 등의 경우 한-EU FTA가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2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한-터키 FTA는 세번변경기준 1가지만 충족하면 되도록 완화되어 있어 보다 쉽게 FTA활용 가능

2) 인증수출자는 수출업체에게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능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적용범위에 따라 모든 협정 및 모든 생상품에 대해 자격을 부여하는 '업체별 인증수출자'와 HS 6단위 기준으로 특정 협정 및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자격을 부여하는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두 가지 형태로 운영

〈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2) preferential origin.

.....3) (Place and date)

.....4)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 한·터키 FTA 원산지신고문안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2) preferential origin.

.....3)(Place and date)

.....4)(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 작성방법 〉

- 1) 한-EU FTA : 인증수출자 번호 기재
- 2) 해당물품의 원산지 기재(예 : 한국산인 경우 'KR')
- 3) 원산지증명서 작성 장소 및 작성일 기재*상업서류에 이들 정보가 명시되어 있을 경우 생략 가능)
- 4) 수출자의 성명을 명확하게 적고 서명. 인증수출자의 경우 서명 생략 가능

3. 일부품목 4단위 세번변경기준 완화

한-터키 FTA에서는 HS 4단위 기준으로 59개 세번에 대해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 Change of Tariff Heading) 적용 시 동일 호(Heading)가 포함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생산자의 재료선택 폭을 확대함으로써 FTA활용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은 원칙적으로 완제품과 동일한 호(Heading)에 분류되는 비원산지물품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나, 한-터키 FTA에서는 동일한 호(Heading)에 분류되는 비원산지물품이 원재료로 사용되었다 하더

라도 체약당사국 내에서 불인정공정 이상의 공정이 수행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여 생산자 및 수출자의 재료선택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FTA활용 편의가 확대되어 있다¹³⁾.

이들 물품의 경우 원재료의 선택에 있어 동일 세번 분류 물품은 원산지물품만을 사용하여야 하는 다른 협정들에 비해, 보다 저렴하거나 양질의 비원산지물품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원재료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됨으로써 생산자 및 수출자의 FTA활용 효과를 증진시켜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13) 일반적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약어로 표시할 때 'CTH(Change of Tariff Heading)'를 사용하는데, 한-터키 FTA에서 허용하고 있는 '동일 호가 포함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은 이와 구분하기 위해 'within CTH'를 사용

/ <표 4> 한-터키 FTA HS 류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동일 호 포함 현황 /

류	09	류	15	류	25	류	38	류	68	류	81
개수	3	개수	4	개수	4	개수	1	개수	1	개수	13
류	11	류	19	류	27	류	39	류	71	류	95
개수	1	개수	2	개수	15	개수	1	개수	3	개수	1
류	13	류	21	류	30	류	44	류	74	류	96
개수	1	개수	1	개수	2	개수	2	개수	1	개수	3

주 : 한-EU FTA도 한-터키 FTA와 동일한 수준(HS 4단위 59개 세번)의 완화된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적용

< 적용사례 > '볶음(Roasting) 공정'만으로 커피의 FTA특혜 혜택 가능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FTA특혜활용)

한-터키 FTA에서 '동일 호가 포함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HS 제0901호의 커피의 경우 볶지 않은 커피(HS 제0901.10호)를 수입(비원산지물품)하여 체약당사국에서 볶음(roasting)공정을 거쳐 볶은 커피(HS 제 0901.20호)를 생산한 경우 4단위 수준에서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지만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으로 인정되어 FTA특혜수출 가능

4. 엄격한 영해 밖 채포 수산물의 완전생산물품 인정범위 설정

한-터키 FTA에서는 영해 밖에서 어로행위를 통해 획득 되는 수산물의 완전생산품 인정요건인 당사국 선박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발효 중인 여타의 협정들이 당사국 선박의 인정요건으로 '당사국에 등록되고 조업 당시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 한-터키 FTA는 50% 이상의 소유권이 당사국의 개인 또는 법인에게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 <표 5> 협정별 당사국 선박 인정요건 /

국기게양	국기게양+등록	국기게양+등록+소유
한-EFTA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인 CEPA, 한-아세안, 한-미, 한-페루, 한-콜롬비아	한-터키, 한-EU

III. 한-터키 FTA 활용성과

1. 對터키 교역동향

1) 연도별 교역 동향

對터키 수출은 1997년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2004년 20억 달러, 2006년 30억 달러, 2007년 40억 달러, 2011년 5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다. 특히, 한-터키 FTA가 발효된 2013년에는 사상 최대의 수출액인 56.6억 달러를 기록하여 향후 한-터키 FTA가 양국 간 교역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확인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對터키 수입의 경우 1990년 최초로 1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2008년에 들어서야 2억 달러를 넘어선 2.8억 달러의 수입이 이루어졌고 2010년 5.1억 달러, 2011년에는 사상 최대치인 8억 달러의 수입이 이루어진 이후 한-터키 FTA 발효 직전인 2012년에는 전년보다 16.4%가 줄어든 6.7억 달러, 한-터키 FTA가 발효된 2013년에는 이보다 조금 증가한 6.9억 달러가 수입되었다.

우리나라와 터키의 교역은 2013년말 기준 63.5억 달러로 이중 우리나라의 對터키 수출은 56.6억 달러이고 수입은 6.9억 달러로 우리나라는 터키에 대해 49.6억 달러의 무역수지흑자를 기록하는 과도한 출초구조를 이루었다.

무역수지흑자 확대 기조는 2014년 들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2014년 1~2월 발생한 무역수지 흑자는 864백만 달러로 對터키 교역에서 최대의 무역수지 흑자가 발생하였던 2013년 동기의 562백만 달러와 비교해 보아도 5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무역수지흑자는 우리나라의 경제기반 강화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계속해서 무역수지흑자폭이 확대 될 경우 터키의 우리나라 농수축산물 시장에 대한 추가적 개방 압력을 불러올 가능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 <표 6> 우리나라와 터키 교역현황 /

(단위 : 백만 달러, %)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1~2
수출	2,661 (-29.5)	3,753 (41.1)	5,070 (35.1)	4,552 (-10.2)	5,658 (24.3)	988 (-)
수입	434 (20.0)	516 (18.8)	805 (55.8)	672 (-16.4)	692 (2.9)	123 (-)
수지	2,226 (-35.8)	3,237 (47.7)	4,266 (31.8)	3,879 (-9.1)	4,966 (28.0)	864 (-)

2) 협정 발효 전후 교역 동향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이 한-터키 FTA 발효(2013.5.1.)를 기준으로 8개월간 3.0% 증가한 반면, 터키로의 수출은 같은 기간 39.0%가 늘어나는 급성장을 보였다.

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전세계 수출이 2012년 대비 2013년 2.1% 증가에 그친 반면 터키 수출은 24.3% 증가하여 한-터키 FTA 발효가 터키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터키에서의 수입은 한-터키 FTA 발효 이후 8개월간 15.1% 증가한 465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수입 또한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수출증가폭과 금액이 수입증가폭과 금액을 상회함으로써 한-터키 FTA 발효 이전부터 이어져 오던 터키 무역수지흑자 기조는 그대로 유지했다.

특히, 한-터키 FTA가 발효된 2013년 만을 놓고 볼 때 전체 수입증가율은 2.9%에 불과하나, 한-터키 FTA 발효 이후 수입증가율은 15.1%에 달해 수출과 마찬가지로 협정 발효가 우리나라의 터키로부터의 수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3년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터키와의 교역이 전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이 1.01%, 수입이 0.13%로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한-터키 FTA 발효 후 역대 최고의 교역량을 기록한 점을 감안해 볼 때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록 짧은 기간이기는 하나 한-터키 FTA 발효 직전인 2013년 1~2월의 교역액이 756백만 달러인데 반해, 2014년 1~2월의 교역액은 이와 비교하여 63.2% 증가한 1,234백만 달러로 이러한 교역확대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해 기간 동안의 교역액을 비교해 볼 때 수출은 2013년 1~2월의 661백만 달러에서 49.5% 늘어난 988백만 달러, 수입은 99백만 달러에서 24.2% 늘어난 123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발효 2년차인 금년에는 발효 직후에 비해 양국 간 교역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 <표 7> 우리나라와 對세계 및 對터키 교역현황 /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2년도			2013년도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對세계	전체	547,870 (-10.2)	519,584 (-16.4)	28,285 (-8.2)	559,632 (2.1)	515,586 (-0.8)	44,047 (55.7)
	5~12월	366,929 (-2.3)	341,957 (-4.1)	24,972 (27.4)	378,157 (3.0)	342,205 (0.1)	35,952 (43.9)
對터키	전체	4,552 (-10.2)	672 (-16.4)	3,879 (-9.1)	5,658 (24.3)	692 (2.9)	4,966 (28.0)
	5~12월	2,877 (-15.8)	404 (-22.5)	2,473 (-14.6)	3,999 (39.0)	465 (15.1)	3,534 (42.9)

2. 품목군별 수출 동향

1) 전체 수출 동향

우리나라의 對터키 수출은 MTI 1단위 기준으로 기계류와 화학공업제품에 집중된 것이 특징이며, 전자전기제품의 경우 한-터키 FTA발효 이후 전년 대비 65.1% 증가한 9천 6백만 달러가 수출되어 최대의 수출실적을 달성하였다.

기계류는 최근 5년간 對터키 수출액의 40% 이상을 꾸준히 차지하고 있으며, 한-터키 FTA발효 연도인 2013년의 경우 수출비중이 40% 이하로 떨어졌지만 금액으로는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기타 품목들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화학공업제품의 경우 2013년 단일 연도 기준으로 최초로 수출 10억 달러를 상회하는 12.9억불의 수출실적을 달성하였는데, 이는 한-터키 FTA 발효 전 석유제품에 대해 3.5~4.7%와 석유화학제품에 대해 0~6.5%의 관세가 부과되던 것이 발효 즉시 관세철폐가 이루어져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전자전기제품은 한-터키 FTA발효 연도인 2013년 단일 연도 최초로 10억 달러에 근접하는 수출실적을 달성하였는데, 이는 터키의 당해 제품군에 대한 수입관세율이 0~14% 수준으로 비교적 높아 관세철폐 기간이 즉시 또는 7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나 관세의 철폐에 따른 가격 경쟁력 강화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표 8> 품목별(MTI 1단위) 對터키 수출증감률 /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총계	2,660,688 (100.0)	3,752,906 (100.0)	5,070,997 (100.0)	4,551,618 (100.0)	5,658,180 (100.0)
농림수산물	7,540 (0.3)	4,075 (0.1)	13,405 (0.3)	11,528 (0.3)	10,455 (0.2)
광산물	3,521 (0.1)	6,250 (0.1)	85,758 (1.7)	12,936 (0.3)	9,312 (0.2)
화학공업제품	433,284 (16.3)	611,096 (16.3)	810,643 (16.0)	776,581 (17.1)	1,297,387 (22.9)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112,997 (4.2)	147,423 (3.9)	228,383 (4.5)	226,965 (5.0)	273,012 (4.8)
섬유류	182,164 (6.8)	271,787 (7.2)	297,601 (5.9)	230,670 (5.1)	275,474 (4.9)
생활용품	18,139 (0.7)	21,616 (0.6)	20,863 (0.4)	16,377 (0.4)	18,959 (0.3)
철강금속제품	262,893 (9.9)	353,267 (9.4)	437,655 (8.6)	467,621 (10.3)	596,691 (10.5)
기계류	1,134,918 (42.7)	1,729,946 (46.1)	2,445,691 (48.2)	2,132,891 (46.9)	2,159,944 (38.2)
전자전기제품	435,708 (16.4)	534,280 (14.2)	670,596 (13.2)	583,995 (12.8)	964,230 (17.0)
잡제품	69,526 (2.6)	73,167 (1.9)	60,401 (1.2)	92,054 (2.0)	52,716 (0.9)

주 : ()내는 당해 연도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2) 한-터키 FTA발효 전후 수출 동향

수출 증가 품목 7개, 감소 품목 3개, 전체 품목의 전년 동기 대비 수출증가율 39.0%, FTA발효 이후 상당한 수준의 수출증대효과가 발생 한 것으로 확인

(수출증가품목) 전자전기제품 > 화학공업제품 > 철강금속제품 >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 섬유류 > 생활용품 > 기계류

전자전기제품은 한-터키 FTA발효 이후 8개월간 2013년도 전체 수출액의 77.7%가 집중되었고, 전년 대비 수출증가율 또한 103.2%에 달해 0~14%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터키의 수입관세율이 높게 책정(0~14%)되어 있는 동 품목군의 특성상 관세인하효과가 수출증대를 유발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터키의 전자전기제품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은 중국(25%)과 슬로바키아(21%)에 이어 18%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3위(2011년말 기준) 수준으로 현재와 같은 수출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중국을 바짝 추격하여 터키 시장을 장악해 나가는 강자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학공업제품은 한-터키 FTA발효 이후 8개월간 2013년도 전체 수출액의 73.8%가 집중되었고, 전년 대비 수출증가율 또한 93.6%에 달해 관세의 즉시 철폐 및 인하가 수출 증가를 견인하였음을 재확인하는 사례이다.

기타 수출이 증가한 5개 품목군 중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을 제외한 4개 품목군은 수출증가금액을 기준으로 볼 때, 수출액이 극히 적었던 2012년을 제외하고 평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한-터키 FTA의 직접적 영향으로

인한 수출증가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지속적인 관측이 필요하다.

(수출감소품목) 잡제품 >광산물 >농림수산물

가장 감소폭이 큰 잡제품의 경우 2012년도 수출액이 평년보다 월등히 높았던 관계로 감소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감소금액 기준으로도 평년에 비해 낮은 수출실적을 기록하였다.

전년 대비 10% 이상 수출이 감소한 광산물의 경우 최근 5년간 수출액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특히 수출액이 극히 높았던 2011년~2012년을 제외한 평년 수준과 비교해 볼 때 수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며 2.8%의 수출금액이 감소한 농림수산물 또한 광산물과 같이 수출액이 높았던 2011년~2012년을 제외하고는 평년 수준의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 <표 9> 한-터키 FTA발효 전후 품목별(MTI 1단위) 수출동향 /

(단위 : 천 달러, %)

구분	전년 동기 (2012.5~12)		발효 후 8개월 (2013.5~12)		증감율 (B/A)
	금액(A)	비중	금액(B)	비중	
합 계	2,877,415	100.0	3,998,969	100.0	39.0
농림수산물	7,709	0.3	7,497	0.2	-2.8
광산물	6,409	0.2	5,751	0.1	-10.3
화학공업제품	494,549	17.2	957,438	23.9	93.6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150,363	5.2	189,864	4.7	26.3
섬유류	153,346	5.3	188,541	4.7	23.0
생활용품	11,015	0.4	12,347	0.3	12.1
철강 금속제품	302,667	10.5	418,943	10.5	38.4
기계류	1,310,566	45.6	1,430,260	35.8	9.1
전자전기제품	369,052	12.8	749,613	18.8	103.1
잡제품	71,739	2.5	38,715	1.0	-46.0

3) 한-터키 FTA발효 이후 수출 상위 품목군의 수출 주도
 물품

여기에서는 한-터키 FTA발효 이후 수출금액 기준으로
 對터키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3대 수출 품목군(MTI 1단위
 기준)인 기계류·화학공업제품·전자전기제품의 수출 상위
 물품을 살펴본다.

(기계류) 기계류는 한-터키 FTA발효 이후 8개월간 터키로
 수출된 품목 중 가장 많은 수출금액을 기록한 품목군
 으로 이중 자동차부품과 자동차 및 건설광산기계가 기계류
 수출을 견인차 역할하였다.

자동차 중에서는 압축점화식의 2,500CC이하의 (승용)차
 량이 1,8억불로 가장 많이 수출되었고, 건설광산기계의 경
 우 지게차의 수출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의 경우 터키의 수입 관세율은 5~10% 수준으로
 품목에 따라 한-터키 FTA발효 이후 즉시~7년의 기간을
 두고 비선형 철폐되도록 되어 있는데, 터키의 자동차 분야
 는 가장 활발한 산업분야 중 하나로 유럽의 생산기지 역
 할을 하고 있고 내수 또한 급증하고 있어 완성차와 부품
 분야 모두 동시에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¹⁴⁾.

(화학공업제품) 화학공업제품의 경우 합성수지와 기타석
 유화학제품이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데, 이들 품목들은
 한-터키 FTA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어 수출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전자전기제품) 전자전기제품은 터키의 수입관세율이 상대
 적으로 높은 품목으로 관세인하로 인한 가격경쟁력 강화
 효과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게 되어 수출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표 10> 수출주도 3대 품목군 수출현황 /

(단위 : 천 달러, %)

MTI 1단위	품명	총수출액	FTA대상 수출액(a)	FTA적용 수출액(b)	FTA활용률 (b/a)
	MTI 3단위				
기계류	자동차부품	378,982	247,024	172,380	69.8
	자동차	337,385	215,046	204,108	94.9
	건설광산기계	249,359	14,977	10,666	71.2
화학공업제품	합성수지	734,816	490,054	415,063	87.7
	기타석유화학제품	107,393	74,282	62,371	84.0
	합성고무	96,750	0	0	0.0
전자전기제품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424,210	1,116	766	68.6
	무선통신기기	113,238	11,185	5,148	46.0
	영상기기	79,803	77,340	74,959	96.9

주 : 1. FTA활용률은 '실제특혜관세혜택 수출/특혜관세자격 수출로 계산
 2. 수출기간은 한-터키 FTA발효 이후 8개월(2013년 5월~12월) 기준

14) 터키는 연간 약 30만대의 차량을 수입하고 있는데 이중 승용차가 2/3정도로 승용차 수입비중이 높으며, 터키 국민의 자동차 보유현황은 인구 1,000명당 75대 수준으로 EU평균인 450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내수시장 확대 여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

전자전기제품군 중 수출금액기준으로는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가 가장 많이 수출되었고 무선통신기기가 두 번째로 많은 수출액을 기록하였으나, 이들 두 개 품목은 발효 초기 관세인하폭이 적고 FTA활용 실익이 발생하는 물품 또한 적어 즉각적인 FTA수혜 품목으로 보기는 어렵다.

3. 품목군별 수입 동향

1) 전체 수입 동향

우리나라의 對터키 수입은 MTI 1단위 기준으로 광산물과 화학공업제품 및 기계류에 집중된 것이 특징이며, 농림수산물의 경우 한-터키 FTA발효 이후 전년 대비 55.6% 증가한 7천6백만 달러가 수입되어 최대의 수입실적을 달성했다.

/ <표 11> 품목별(MTI 1단위) 對터키 수입증감률 /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총계	434,435 (100.0)	516,290 (100.0)	804,624 (100.0)	672,311 (100.0)	691,835 (100.0)
농림수산물	47,693 (11.0)	53,607 (10.4)	53,174 (6.6)	49,276 (7.3)	76,664 (11.1)
광산물	165,595 (38.1)	135,308 (26.2)	329,207 (41.0)	329,970 (49.1)	226,153 (32.7)
화학공업제품	22,419 (5.2)	45,976 (8.9)	55,963 (6.9)	42,673 (6.3)	116,607 (16.9)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6,693 (1.6)	13,365 (2.6)	13,491 (1.7)	13,772 (2.0)	19,146 (2.8)
섬유류	37,972 (8.7)	51,425 (10.0)	56,189 (7.0)	62,960 (9.4)	67,753 (9.8)
생활용품	3,611 (0.8)	8,652 (1.7)	14,575 (1.8)	15,215 (2.3)	13,347 (1.9)
철강금속제품	27,394 (6.3)	17,096 (3.3)	29,483 (3.7)	21,906 (3.3)	28,669 (4.1)
기계류	93,496 (21.5)	161,405 (31.3)	211,235 (26.2)	104,418 (15.5)	107,046 (15.5)
전자전기제품	29,434 (6.8)	29,183 (5.6)	41,022 (5.1)	31,849 (4.8)	36,053 (5.2)
잡제품	128 (0.0)	273 (0.0)	284 (0.0)	271 (0.0)	396 (0.0)

주 : ()내는 당해 연도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광산물은 한-터키 FTA 발효 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5년간 2010년도를 제외하고 對터키 수입액의 30% 이상을 꾸준히 차지하고 있으며, 한-터키 FTA가 발효된 2013년의 경우 전년 대비 31.5%가 감소한 2억2천6백만 달러가 수입

화학공업제품의 경우 2013년 단일 연도 기준으로 최초로 수입 1억 달러를 상회하는 1.2억 달러의 수입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對터키 수출증가 원인과 마찬가지로 한-터키 FTA 발효 전 석유제품에 대해 0~8%와 석유 화학제품에 대해 3~8%의 관세가 부과되던 것이 발효 즉시 관세가 인하되거나 철폐되어 가격인하효과가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기계류는 한-터키 FTA발효 연도인 2013년 1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입이 발생하여 당해 연도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5%로 높은 편이나, 금액 및 비중 면에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한-터키 FTA발효 전후 수입 동향

수입 증가 품목이 7개, 감소 품목 3개, 전체 품목의 수입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5.1%, 수입시장에서도 터키와의 교역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수입증가품목) 철강금속제품 > 화학공업제품 > 농림수산물 >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 전자전기제품 > 기계류 > 섬유류

화학공업제품은 한-터키 FTA발효 이후 8개월간 2013년도 전체 수입액의 52.2%가 집중되었고, 전년 대비 수출 증가율은 96.9%로 우리나라의 對터키 수출증가요인과 같이 FTA발효로 인한 관세인하효과가 수입을 증대시킨 요인으로 판단된다.

농림수산물은 한-터키 FTA발효 이후 8개월간 2013년도 전체 수입액의 71.7%가 집중되었고, 전년 대비 수입 증가율 또한 67.6%에 달해 상대적으로 수입관세율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동 품목군의 특성상 관세인하효과가 수입증대를 유발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은 최근 5년간 2010년도를 제외하고 당해 연도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 이하이던 것이 2.8%로 증가하였고 한-터키 FTA발효 이후 8개월간 수입증가율이 40.3%로 매우 높은 수준의 수입증대효과가 발생했다.

기타 수입이 증가한 품목군 중 전기전자제품의 수입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한-터키 FTA 발효 이후 8개월에 전체 2013년도 전체 수입의 73.2%가 집중되었고, 기계류와 섬유류의 수입도 일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감소품목) 잡제품 > 광산물 > 생활용품

가장 감소폭이 큰 잡제품의 경우 전체 수입액은 2012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한-터키 FTA발효 이후 수입실적이 감소했다.

광산물의 경우 잡제품 다음으로 수입액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으나 2012년도 수입액이 평년보다 월등히 높았던 관계로 감소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며, 총 수입금액 기준으로는 평년보다 수입금액이 많았던 2011년~2012년을 제외하고 높은 수입금액을 기록했다.

생활용품은 한-터키 FTA발효 이후 8개월간 전년 동기 대비 -6.5%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당해 연도 총수입액과 전체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 비중을 기준으로 볼 때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표 12> 한-터키 FTA발효 전후 품목별(MTI 1단위) 수입동향 /

(단위 : 천 달러, %)

구분	전년 동기 (2012.5~12)		발효 후 8개월 (2013.5~12)		증감율 (B/A)
	금액(A)	비중	금액(B)	비중	
합계	404,370	100.0	465,267	100.0	15.1
농림수산물	32,809	8.1	55,003	31.5	67.6
광산물	188,604	46.6	161,630	27.0	-14.3
화학공업제품	30,890	7.6	60,819	10.2	96.9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10,464	2.6	14,686	2.5	40.3
섬유류	42,695	10.6	45,174	7.5	5.8
생활용품	9,954	2.4	9,304	1.6	-6.5
철강금속제품	9,236	2.3	22,372	3.7	142.2
기계류	59,710	14.8	69,748	11.6	16.8
전자전기제품	19,857	4.9	26,408	4.4	32.9
잡제품	151	0.0	123	0.0	-18.5

3) 한-터키 FTA발효 이후 수입 상위 품목군의 수입 주도 물품

여기에서는 한-터키 FTA발효 이후 금액기준으로 터키로부터의 수입을 주도하고 있는 3대 수입 품목군(MTI 1단위 기준)인 광산물·기계류·농림수산물의 수입 상위 물품을 살펴본다.

(광산물) 광산물은 2013년 터키로부터 수입된 품목중 수입금액 비중이 32.7%로 가장 높으며 FTA발효 이후 8개월 간의 경우에도 27.0%의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군이다.

터키로부터 수입된 광산물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물품은 석유제품으로 이들 제품은 FTA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된 것이 수입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기계류) 기계류는 한-터키 FTA발효 이후 8개월간 터키로부터 수입된 품목 중 두 번째로 많은 수입금액을 기록한 품목군으로 이중 자동차부품과 원동기 및 펌프의 수입액이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기계류의 수입을 주도하고 있는 3대 품목의 관세 혜택이 발효 즉시 0%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현재 50% 이하에 머물러 있는 FTA활용률이 개선될 경우 이들 품목을 위주로 한 수입활성화가 기대된다.

(농림수산물) 농림수산물은 수입금액 기준으로 식물성 물질과 기호식품, 어육 및 어란의 순으로 수입되었으며, 가장 수입금액이 많았던 식물성물질은 사료가 가장 많이 수입되었고 다음으로 기타식물성유지와 식물성액즙이 수입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표 13> 수입주도 3대 품목군 수입현황 /

(단위 : 천 달러, %)

MTI 1단위	품명	총수입액	FTA대상 수입액(a)	FTA적용 수입액(b)	FTA활용률 (b/a)
	MTI 3단위				
광산물	석유제품	182,903	182,876	131,947	72.2
	기타비금속광물	12,111	12,106	6,460	53.4
	금은 및 백금	11,645	2,701	0	0.0
기계류	자동차부품	51,843	51,842	22,567	43.5
	원동기 및 펌프	15,706	15,697	2,444	15.6
	기계요소	13,732	13,654	6,406	38.5
농림수산물	식물성물질	20,866	3,030	1,187	39.2
	기호식품	18,380	15,593	1,720	11.0
	어육 및 어란	11,829	11,829	0	0.0

주 : 1. FTA활용률은 '실제특혜관세혜택 수입/특혜관세자격 수입'으로 계산
 2. 수입기간은 한-터키 FTA발효 이후 8개월(2013년 5월~12월) 기준



터키 공화국
 (Republic of Turkey)

수도 : 앙카라
 언어 : 터키어
 면적 : 783,562km²
 인구 : 약 81,619,392명 (세계 16위)
 종교 : 이슬람교 99%

터키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와 인연이 많아 형제의 나라라고도 부른다. 터키인의 조상은 훈족과 튀르크족으로, 한자식 이름은 흉노와 돌궐이다.

1950년, 6·25 전쟁으로 연합군으로 군대를 파견하여 우리나라를 도와주었고, 이 전쟁에서 많은 터키 군인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다. 이런 배경으로 인해 터키인들은 지금도 우리나라를 매우 친하게 생각하여 칸카르데쉬, 즉 피로 맺어진 형제라고 부른다.